

뚝딱사회보험법

제2판 1쇄 정오표 및 추록


(2026년 04월 14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 및 추록은 2025년 10월 14일 발행된 “뚝딱사회보험법(제2판)”
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똑딱사회보험법(제2판) 제2판(2025년) 1쇄 - 정오표 및 추록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6년 04월 14일 기준)

2025년 10월 14일 발행된 똑딱사회보험법(제2판) 1쇄의 추가(보완)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 및 추록을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
페이지 [위치]	수정사항	
<p>p. 135 6-6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</p>	<p>[법 개정]</p> <p>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</p>	<p>요건별 지원 금액</p> <p>요건 ②에 따른 지원 금액 ②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(출산전후 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)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고용·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.</p>
<p>p. 161 2.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등</p>	<p>[법 개정]</p> <p>자영업자 실업급여 특례</p> <p>기초일액</p>	<p>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제50조 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①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, 그 기초일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: 최저기초일액 2.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11만 3500원)을 초과하는 경우 :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11만 3500원)
<p>p. 166 27.</p>	<p>[법 개정]</p> <p>27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6만 6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만 6천 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.</p> <p> 해설 및 정답</p>	<p>27 ×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11만 3500원이다.</p>

<p>p.174 3. 지급 기간 등</p>	<p>[법 개정]</p> <hr/> <p>☆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·사산휴가기간 90일(다태아 120일)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 원(다태아 880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 : 660만 원(다태아 880만 원)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·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(다태아 120일, 미숙아 100일) 미만인 경우 : 일수로 계산한 금액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,333,330 원을 초과하는 경우 : 7,333,330원
<p>p. 367 1. 급여의 제한</p>	<p>[법 개정]</p> <p>③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, 미지급급여,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(이하 이 항에서 “유족연금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「민법」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
<p>p. 408 17.</p>	<p>[법 개정]</p> <p>1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㉮21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. 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.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,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. 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<p>p. 408 18.</p>	<p>[법 개정]</p> <p>1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㉮20·16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.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, 전문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.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.

<p>p. 418 10.</p>	<p>[법 개정]</p> <p>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㉮17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선임한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<p>p. 426 25.</p>	<p>[내용 수정]</p> <p>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㉮25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 ②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 “중증요양상태”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. ④ “장해”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. ⑤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,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.
<p>p. 431 35.</p>	<p>[법 개정]</p> <p>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㉮2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당 근로자의 부상·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으나,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. ②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·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. ③ 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④ 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 ⑤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·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.

<p>p. 440 54.</p>	<p>[내용 수정]</p> <p>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㉠20</p> <p>①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. ④ 고용노동부에 진폐심사회의를 둔다. ⑤ 장애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에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
<p>p. 466 28.</p>	<p>[법 개정]</p> <p>해설 및 정답</p> <p>②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③ 기초일액의 상한은 11만 3500원이다. ④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⑤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정답 ①</p>
<p>p. 478 55.</p>	<p>[법 개정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</p> <p>해설 및 정답</p> <p>1. 최초 10시간 = 250만 원 × 10/40 2. 나머지 10시간 = 160만 원 × 10/40 62만 5천 원 + 40만 원 = 102만 5천 원 정답 ⑤</p>
<p>p. 480 58.</p>	<p>[법 개정]</p> <p>58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㉠21번형</p> <p>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. ②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 8천 100원이다. ③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. ⑤ 예술인은 실업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
<p>p. 519 17.</p>	<p>[법 개정]</p> <p>17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? ㉠25</p> <p>① 104.2원 ② 211.5원 ③ 354.5원 ④ 709.0원 ⑤ 800.0원</p>

<p>p. 519 19.</p>	<p>[법 개정]</p> <p>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㉮23</p> <p>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. 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로 한다. ③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④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. ⑤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.</p>
<p>p. 526 5.</p>	<p>[법 개정]</p> <p>05 국민연금법령상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㉮19편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>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</p> <p>1.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: 자녀 1명마다 (ㄱ)개월을 더한 개월 수 2.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: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(ㄴ)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(ㄷ)개월을 더한 개월 수</p> </div>
<p>p. 536 26.</p>	<p>[법 개정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>해설 및 정답</p> <p>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,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정답 ①</p> </div>